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91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건물 부식 및 악취를 비롯하여 구민 생활에 유해조류가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안 제4조)

라.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7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2. 5. ~ 2024. 2.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배설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1월 2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14.]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 2022. 12. 13., 2024. 1. 23.>

1. ~ 9. (생략)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 부 칙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14.>

###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카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빨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카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